

안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안

의안 번호	9-224
----------	-------

제출년월일 : 2023. 8. 14.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안산시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4조)
- 지급대상 및 지급신청, 소득·재산조사 및 지급방법·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8조)
-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부터 제10조)

제정조례안 : 【붙임 1】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2】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예산수반사항 : 【붙임 3】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23. 7. 11. ~ 2023. 7. 21. (10일간)

기타 참고사항

- 방침결정문 : 【붙임 4】

【붙임 1】

안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안산시 거주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안산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안산시 예술인에게 안산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기회소득은 지원 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않은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명 자료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시장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거주불명 등록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이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행위로 본다.

소관 실·과		문화예술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담당·팀장 직위·성명	예술팀장 이경영
	담당자 성명·전화	우영진 (행정 2795)